

2024학년도

배움, 키움, 나눔을 실천하는 함께 행복한 학교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신태인초등학교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1길 54-3

교장실: (063) 571 2227 교무실: (063) 571 2141

행정실: (063) 571 2142 팩스: (063) 571 7550



목 차

1. 학교 현황	1
2. 신태인교육 실천 방향	2
3. 2024학년도 중점 교육활동	3
4. 2024학년도 교육과정편제표	6
5. 2024학년도 주요 학사일정	7
6. 교육과정 시간운영	8
7. 방과후 운영일정 및 프로그램	9
8. 생활기록부 출결 처리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10
9. 특수-통합교육	13
10.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14
11.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16
12. 2024 학부모 교육 자료	17
13. 학부모 온라인 교육	42
14. 학교 시설 배치도	43



2024학년도 학사 일정표

1 학교 현황

가) 학교 연혁

연도	주요 학교 연혁	연도	주요 학교 연혁
1923.05.20.	신태인보통공립학교 개교	2022.03.0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지정 혁신학교
1981.03.01.	병설유치원 개원	2023.12.28.	제100회 졸업식(총 16,200명 졸업)
2000.03.01.	신태인읍 4개교 통폐합	2024.03.01.	제29대 양향숙 교장 부임
2002.02.20.	신축학교 개관식	2024.03.01.	9학급 편성(특수학급 포함)
2009.03.01.	다문화가정 교육연구시범학교		

나) 학생현황

학년	1	2	3	4	5	6	계	라온반 (특수학급)
학급 수	1	1	2	1	1	2	8	1
남학생 수	12	7	15	10	8	21	73	4
여학생 수	8	10	12	10	14	11	65	.
계	20	17	27	20	22	32	13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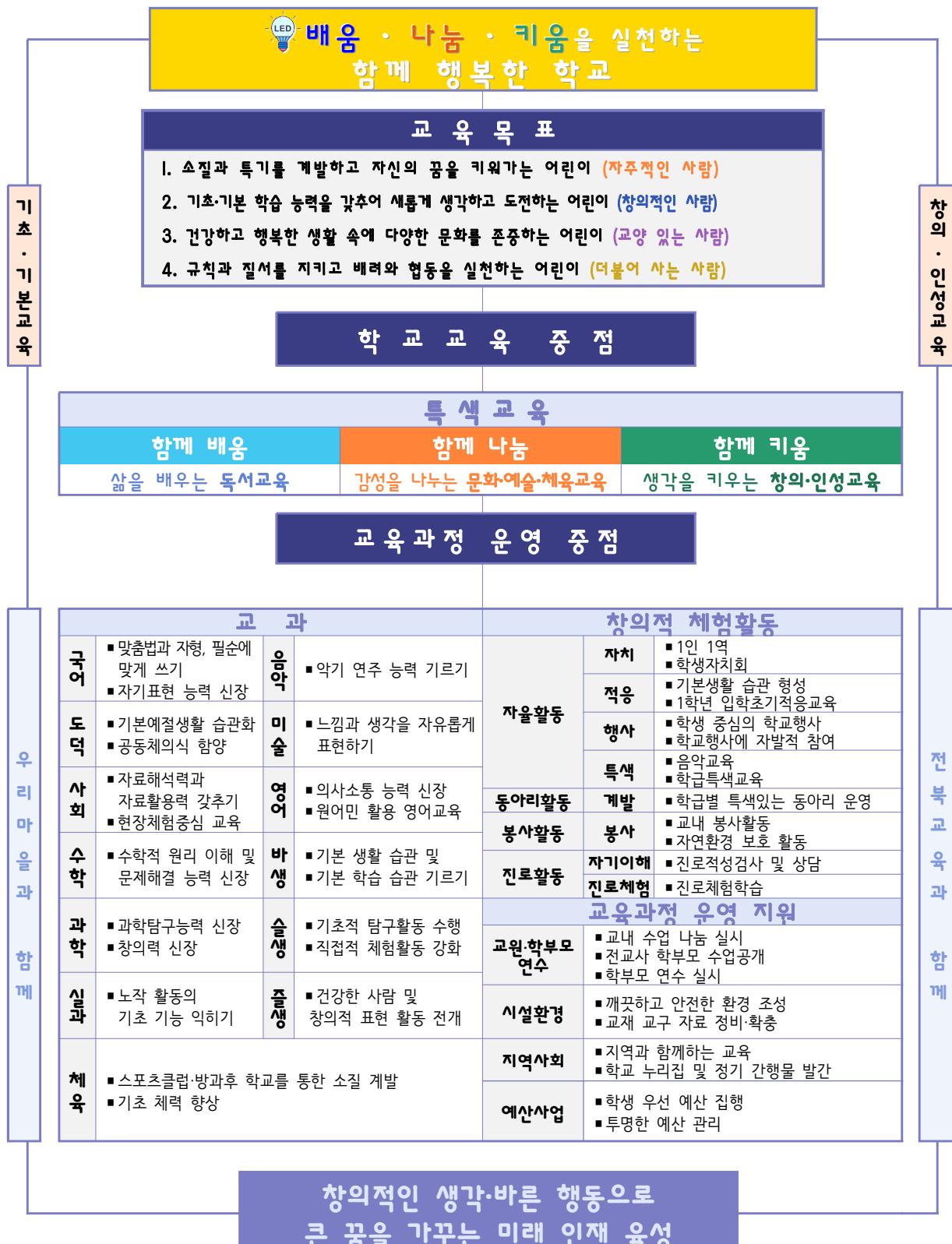
다) 교직원 현황

구분 성별	교장	교감	부장 교사	교사 초등	교사 유치원	보건 교사	영양 교사	특수 교사	소계	행정 실장	행정 사무	행정 시설	행정 운전	교무 실무	방과후 실무	초등돌봄 전담 교사	조리 종사	스포츠 강사	기타	소계
남	.	.	1	5	6	1	1	1	1	.	.	.	1	1	6	
여	1	1	1	6	4	1	1	1	16	.	2	.	.	1	1	1	3	.	2	10
계	1	1	2	11	4	1	1	1	22	1	3	1	1	1	1	1	3	1	3	16

라) 시설 현황

구분	교지			교실				특별실							
	대지 (m ²)	체육장 (m ²)	계 (m ²)	정규	유치원	관리실	과학실	연구실	컴퓨터실	정보실	영어실	영어 체험센터			
수량	30,267	6,800	37,067	14	3	3	2	6	1	1	1	1			
특별실															
구분	상담실	도서실	구강 보건실	보건실	조리실습실	방송실	실내체육실	음악실	시청각실	돌봄 교실	방과후 교실	회의실			
수량	1	1	1	1	1	1	1	1	1	1	1	3			
기타시설															
구분	강당	식상활동관	차고	화장실	창고	조회대	컴퓨터	TV	전자칠판	태블릿 pc	과학자료	체육 교구	학생 도서		
수량	1	1	1	8	1	1	64	21	2	87	450	100	12,868		

2 | 신태인교육 실천 방향





“

수업 중심으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는 학교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학교

기초학력 지도와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함께 있어 통제보다 지원을 받는 학교

교사의 수고를 알아주고 믿어주고 지원해주는 학교

”

*2023 교원 대상 설문 결과

특색교육 1

L

(Learn together) 함께 배움

혁신과제 1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전문적 학습공동체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 - 온 책 읽기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 - 온 책 읽기	기초학력 튼튼!	미래역량 든든!	스스로 배우고 돌아보는 성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 - 학년별 온 책 읽기 • 기초학력 튼튼! • 미래역량 든든! • 스스로 배우고 돌아보는 성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독서 10분 활동 • 1~6학년 그림책 읽기 • 1~6학년 온 책 읽기 • 정읍교육지원청 지역연계 특색프로그램 책샘 프로젝트 운영(1~4학년) •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독서행사 연 2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중 진단활동 실시 및 더딤 아동 판별 • 기초학력 지도 프로그램 연간 운영 • 수학과 기초학력 제고 및 맞춤형 지도를 위한 학년별 교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 토론수업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협력적 소통 역량강화 • 자치활동 연계 수업 • SW소양교육을 위한 로봇코딩 교육(5,6학년) •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체험중심 수업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및 자율적 문제해결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능력 중심 평가 •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 등의 평가 방식 다양화 • 연2회 성장평가 결과 발송으로 교육과정 운영 내용 및 학생 배움과 성장의 정도를 가정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학습공동체 - 이심전심 고민 나눔 - 함께 성장하기(자율동아리) - 함께 배우기(각종 연수) • 빛깔이 있는 교사 교육과정 운영 		<h3>이심전심 고민 나눔</h3>		<h3>빛깔이 있는 교사 교육과정</h3>								
<table border="1"> <tr> <td>1주차</td> <td>[함께 성장하기] 교사 동아리</td> </tr> <tr> <td>2주차</td> <td>이심전심 고민 나눔</td> </tr> <tr> <td>3주차</td> <td>[함께 성장하기] 교사 동아리</td> </tr> <tr> <td>4주차</td> <td>[함께 배우기] 교사 연수</td> </tr> </table>		1주차	[함께 성장하기] 교사 동아리	2주차	이심전심 고민 나눔	3주차	[함께 성장하기] 교사 동아리	4주차	[함께 배우기] 교사 연수	<h3>함께 성장하기, 함께 배우기</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동학년 중심 협의회 강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 학년군 중심 성취기준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과정 총론 읽기 • 2월, 7월, 11월 교직원 워크숍으로 교사 교육과정 편성 및 사례 공유 • 교직원 독서 모임 • 학년별 주제 중심 프로젝트 운영 • 빛깔이 있는 교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별 예산 지원
1주차	[함께 성장하기] 교사 동아리											
2주차	이심전심 고민 나눔											
3주차	[함께 성장하기] 교사 동아리											
4주차	[함께 배우기] 교사 연수											

특색교육 2

E

(Empathize with) 함께 나눔

혁신과제 2

(Educational community) 따뜻한 교육공동체

‘감성’을 나누는 음악교육	‘감성’을 나누는 음악교육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교육	‘같이의 가치’ 체육교육	LED 다문화교육 · 세계시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성’을 나누는 음악교육 - 작은 음악회, 1인 악기 •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교육 • ‘같이의 가치’ 체육교육 • LED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1악기 활동 - 연1회 학습발표회 발표 활동(1~6학년) • 예술강사 협력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e센터 연계 상담 • 교육과정 속 인성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 다례교육(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교육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 체육 강사 협력 수업 - 어린이날 체육행사 - 1~2학년 놀이체육 창체 동아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 나>마을>나라>세계로 눈을 돌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동료성으로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 교권 보호로 교육력 확보 • ‘따뜻한 동행’ 학부모교육 • 엄마풀 학부모회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h3>동로성 구축 노력</h3>	<h3>학부모 교육 활성화</h3>	<h3>엄마풀 학부모회</h3>	<h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학습공동체(수업과 생활지도 고민 나눔, 교사 자율 동아리, 연수)을 통한 동로성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설명회(연1회) • 교육공동체 소통의 날 - 학부모 수업 공개(연1회) • 학부모와 학교혁신의 가치 공유를 통해 ‘따뜻한 동행의 상호 협력 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초 학부모회 구성을 통한 학교교육활동 지원 및 유기적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복지 사제 멘토링 • 교육복지 긴급 지원

특색교육 3**혁신과제 3****D**(Develop together) **함께 키움**(Democratic Autonomous community) **민주적 자치공동체**

자(自)몽(夢) 학생자치 자(自)몽(夢) 동아리활동	자(自)몽(夢) 진로체험	꿈길 찾기 방과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自)몽(夢) 학생자치 • 자(自)몽(夢) 진로체험 • 자(自)몽(夢) 동아리활동 • 꿈길 찾기 방과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 중심 학교생활 현안 자율적 해결방법 모색 • 학년(급)별 학생 희망을 반영한 동아리 활동 운영 및 동아리별 예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 특성에 따른 진로교육 실시 • 성격검사 및 진로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 지원(5,6학년) • 다양한 진로 체험활동 연간 운영으로 진로 탐색의 기회 마련
함께 만드는 우리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만드는 우리 학교 - 교사, 학생, 학부모의 마음을 담는 교육과정 - 수업 중심 업무 재구조화 - 민주적 의사결정체로서의 교무회의, 교사회 운영 	수업 중심 업무 재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만들어가는 학급교육과정 - 3월 초 학급실태파악을 위한 학생진단활동 및 적응활동 운영 - 학년 초 성취기준 함께 살펴보기 - 교사·학생 협의를 통한 학급 교육과정 수립 및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 	민주적 의사결정체로서의 교무회의, 교사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회 정례회(교무회의) • 학기별 1회 교사회 • 안건 발생에 따른 회의 소집 • 팀장(부장) 중심 전달체계로 회의 간소화 및 효율적 의사 소통 구조 구축

혁신과제 4**마을과 함께, 전북교육과 함께 —
LED의 실천으로 더 나아가기**

정읍지역 특색사업 연계 교육	인성 교육 특화 지역 연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과 함께 자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딩, 책샘, 마을소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려와 존중'의 생활태도 집중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e센터 연계 심리 상담 지원 - 3월 초 학급 세우기 활동 - 학급별 어울림프로그램 실시 - 생활지도 집중학년 심리 상담 프로그램 지원 - 다례교육을 통한 예의범절의 체화

만들어가기**“함께 행복한 학교”를 위한 —
LED 혁신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질 관리****함께 배움**

교육과정 사례 나눔을 통한 수업 반성 및 이에 따른 전문적 학습공동체 추진 과제에 반영

함께 나눔연3회(2월, 7월, 11월) 교육과정 협의회 운영을 통해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에 의한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수립·운영
(교육과정 세움 주간 포함)**함께 키움**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연 1회 설문 및 결과 반영

4 | 2024학년도 교육과정편제표

구 분	1학년								3학년								5학년								
	기준 편성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기준 편성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기준 편성		2024학년도			2025학년도			
	1-1	1-2	계	2-1	2-2	계		3-1	3-2	계	4-1	4-2	계		5-1	5-2	계	6-1	6-2	계					
교 과 군	국어	482	482	126	118	244	119	119	238	408	408	105	99	204	102	102	204	408	408	105	99	204	102	102	204
	사회 / 도덕									272	272	53	49	102	51	51	102	272	272	53	49	102	51	51	102
	수학	256	256	62	58	120	68	68	136	272	272	70	66	136	68	68	136	272	272	70	66	136	68	68	136
	과학 / 실과									204	204	53	49	102	51	51	102	340	340	53	49	102	51	51	102
	체육									204	204	53	49	102	51	51	102	204	204	53	49	102	51	51	102
	예술									272	272	35	33	68	34	34	68	272	272	35	33	68	34	34	68
	미술											35	33	68	34	34	68			35	33	68	34	34	68
	영어									136	136	35	33	68	34	34	68	204	204	53	49	102	51	51	102
	바른생활	144	144	35	33	68	38	38	76																
	슬기로운생활	224	224	55	51	106	59	59	118																
	즐거운생활	400	400	97	91	188	106	106	212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계	1506	1506	375	351	726	390	390	780	1768	1768	457	427	884	442	442	884	1972	1972	510	476	986	493	493	986
	자율활동			56	52	108	37	37	74			27	25	52	33	33	66			20	28	48	30	30	60
	동아리활동			10	10	20	10	10	20			22	20	42	13	13	26			21	19	40	13	13	26
	봉사활동									204	204	2	2	4	0	0	0			6	0	6	3	3	6
	진로활동			3	3	6	5	5	10			2	2	4	5	5	10			6	2	8	5	5	10
	(창체) 계			69	65	134	52	52	104			53	49	102	51	51	102			53	49	102	51	51	102
	총 계	1744	1744	444	416	860	442	442	884	1972	1972	510	476	986	493	493	986	2176	2176	563	525	1088	544	544	1088
	학기당 과목수			5	5		5	5				9	9		9	9				10	10		10	10	
	2학년									4학년								6학년							
	구 분	기준 편성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기준 편성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기준 편성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기준 편성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기준 편성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기준 편성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기준 편성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기준 편성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교 과 군	국어	482	482	120	108	228	131	123	254	408	408	108	96	204	105	99	204	408	408	108	96	204	105	99	204
	사회 / 도덕									272	272	54	48	102	53	49	102	272	272	54	48	102	53	49	102
	도덕											18	16	34	18	16	34			18	16	34	18	16	34
	수학	256	256	64	56	120	70	66	136	272	272	72	64	136	70	66	136	272	272	72	64	136	70	66	136
	과학 / 실과									204	204	54	48	102	53	49	102	340	340	54	48	102	53	49	102
	체육									204	204	54	48	102	53	49	102	204	204	54	48	102	53	49	102
	예술									272	272	36	32	68	35	33	68	272	272	36	32	68	35	33	68
	미술											36	32	68	35	33	68			36	32	68	35	33	68
	영어									136	136	36	32	68	35	33	68	204	204	54	48	102	53	49	102
	바른생활	144	137	32	28	60	40	37	77																
창의적 체험활동	슬기로운생활	224	208	48	42	90	61	57	118																
	즐거운생활	400	400	97	90	187	110	103	213																
	(교과) 계	1506	1483	361	324	685	412	386	798	1768	1768	468	416	884	457	427	884	1972	1972	522	464	986	510	476	986
	자율활동			46	39	85	22	20	42			28	24	52	32	31	63			26	22	48	34	29	63
	동아리활동			24	24	48	21	19	40			22	18	40	13	12	25			22	18	40	11	11	22
	봉사활동			4	4	8				204	204	4	2	6	2	2	4			4	2	6	3	5	8
	진로활동			2	2	4	2	2	4			2	2	4	5	5	10			6	2	8	4	5	9
	안전한생활			16	14	30						56	46	102	52	50	102			58	44	102	52	50	102
	(창체) 계			92	83	175	45	41	86																
	총 계	1744	1744	453	407	860	457	427	884	1972	1972	524	462	986	509	477	986	2176	2176	580	508	1088	562	526	1088
	학기당 과목수			5	5		5	5				9	9		9	9				10	10		10	10	

종류	일 시	비 고											
입학일	3월 4일(월)												
여름 방학	7월 27일(토) ~ 8월 18일(일)	23일											
2학기 시작일	8월 19일(월)												
겨울 방학	1월 4일(토) ~ 2월 28일(금)	56일											
졸업일	1월 3일(금)												
종업일	1월 3일(금)												
재량 휴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1일(수) ■ 5월 20일(월) ■ 6월 7일(금) ■ 10월 4일(금) 	4일											
공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일절: 3월 1일(금) ■ 국회의원선거: 4월 10일(수) ■ 어린이날: 5월 5일(일) ■ 대체공휴일: 5월 6일(월) ■ 부처님오신날: 5월 15일(수) ■ 현충일: 6월 6일(목) ■ 광복절: 8월 15일(목) ■ 추석연휴: 9월 16일(월) ~ 9월 18일(수) ■ 개천절: 10월 3일(목) ■ 한글날: 10월 9일(수) ■ 기독탄신일: 12월 25일(수) ■ 신정: 1월 1일(수) ■ 설연휴: 1월 28일(화) ~ 1월 30일(목) 	17일											
< 월별 수업 일수 >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
수업일수	20	21	19	18	20	10	18	20	21	21	2	0	190
휴업일수	11	9	12	12	11	21	12	11	9	10	29	28	175
◆ 학기별 수업 일수: ▶ 1학기: 98일 ▶ 2학기 92일 ▶ 연간 190일													

* 학기 중 2024.10.1.(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시 대응

▶ 2학기 시작일 변경: 8.16.(금), 여름방학 일수 1일 감축(종업일, 수업일수 등은 동일)

6 교육과정 시간 운영

가 일일 시정 운영

1~4학년		5,6학년	
08:40~08:55	아침활동	08:40~08:55	아침활동
09:00~09:40	1교시	09:00~09:40	1교시
09:50~10:30	2교시	09:50~10:30	2교시
10:40~11:20	3교시	10:40~11:20	3교시
11:30~12:10	4교시	11:30~12:10	4-5교시 (블록)
12:10~13:10	점심시간	12:10~12:50	
13:10~13:50	5교시	12:50~14:00	점심시간
14:00~14:40	6교시	14:00~14:40	6교시
방과후 학교			
14:00 ~ 14:40	7교시	1·2학년	
14:50 ~ 15:30	8교시	3·4학년	
15:40 ~ 16:20	9교시	5·6학년	

* 학교시 학교버스 출발시각: 월,화,목, 금 -16시 25분, 수-14시
 * 기상특보, 감염병 대응 등의 학교 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나 요일별 기준시수

학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계
1학년	4	5	5	5	4	23
2학년	4	5	5	5	5/4	24/23
3학년	5	5	5	6	5	26
4학년	5	5/6	5	6	5	26/27
5학년	6	6	5	6	6	29
6학년	6	6	5	6	6	29

* 학기 말 단축수업 등 학교 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4학년은 2학기 시작 후 2번(8월20일, 27일) 화요일 6교시 진행합니다.

가 방과후학교

운영기간	1학기	2024.03.04.~ 2024.08.18	여름방학중 운영기간	2024.07.29.~ 2024.08.02(1주)
	2학기	2024.08.19.~ 2025.01.10.	겨울방학중 운영기간	2024.01.06.~ 2025.01.10.(1주)
운영시간	주중	14:00~16:20	토요일	미운영
	휴일	미운영	방학	09:00~12:10

순	영역	프로그램명	요일	반별 운영 시간			수강료 (월)	정원 (반별)	비고
1	정보	s/w교실 (박은경)	월, 금	A반	1~4학년	14:00~14:40	전액무료	20명	
				B반	3~6학년	14:50~15:30			
				C반	3~6학년	15:40~16:20			
2	체육	스포츠교실 (김종규)	화, 금	A반	1~3학년	14:50~15:30	전액무료	20명	
				B반	3~6학년	15:40~16:20			
3	음악	밴드합주 (허찬홍)	월, 금	A반	3~6학년	14:50~15:30	전액무료	15명	
				B반	3~6학년	15:40~16:20			
4	언어	영어 (최한나)	화, 목	A반	1~2학년	14:00~14:40	전액무료	20명	
				B반	3~4학년	14:50~15:30			
				C반	5~6학년	15:40~16:20			
5	미술	생활미술 (이명숙)	화, 목	A반	1~4학년	14:00~14:40	수익자부담 (월 재료비 12,000원)	20명	수익자 부담/ 자유 수강권 지원
				B반	3~6학년	14:50~15:30			
6	과학	드론 (고영주)	월, 금	A반	1~4학년	14:00~14:40	수익자부담 (월 교구대여비 10,000원)	20명	
				B반	3~6학년	14:50~15:30			
7	수학	주산암산 (강대례)	화, 목	A반	1~4학년	14:00~14:40	전액무료	20명	
				B반	3~6학년	14:50~15:30			

나 돌봄교실

운영 기간	1학기(2024.3.4.~8.18.)		2학기(2024.8.19.~2025.2.29.)	
	1학기중	여름방학중	2학기중	겨울방학중
운영 기간	2024.03.04.~ 2024.07.26	2024.07.29.~ 2024.08.09	2024.08.19.~ 2025.01.03	2025.01.06.~ 2025.01.17
운영 시간	주중 12:30~16:30 (토, 공휴일 미운영)	오전 09:00~12:10	주중 12:30~16:30 (토, 공휴일 미운영)	오전 09:00~12:10

※ 외부강사 활용 단체프로그램(교육지원청 위탁강사-큰사람아카데미)

순	프로그램명	강사명	요일	운영 시간	수강료 (월)	대상
1	돌봄미술	윤영신	월	14:00~15:30(2시간)	무료	돌봄교실 이용학생
2	돌봄 놀이체육	김종규	수	14:00~15:30(2시간)	무료	돌봄교실 이용학생

가 생활기록부 출결 처리

1)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사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마)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바)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경조사 일 수에 재량휴 업일과 공휴 일 및 토요 일은 산입하 지 않음.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친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자)~(카) 생략

2) 다음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마)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바) 환경부로부터 기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라)~바)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미인정 결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 (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사)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결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부모·가족 불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라) 생략

☞ 출결관련 각종 서식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중식 기준으로 오전 또는 오후만 가능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 1일로 봅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 연속으로 5일 이상 장기 실시하는 경우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통화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기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기정학습의 경우 [서식 2] 학교장 허가 기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기정학습의 경우 [서식 3-1])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입니다.
-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 |
|--|
|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

라)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합니다.

☞ 체험학습 관련 서식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 본교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방과후 운영비 지원, 치료지원, 보조기구 지원 등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본교에는 개별화된 교육을 위한 학급인 ‘라온반’이 있습니다.

나 왜 특수교육이 필요한가요?

학교는 작은 예비 사회입니다. 통합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수업 시간의 일부나 전부를 함께 교육받는 형태로서, 장애학생과 비장애인 학생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학생은 또래와 지내며 사회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비장애학생들은 장애학생과 상호작용하며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하고, 나와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인격체로서 이해하고 수용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 특수교육 관련 용어

1)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모든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있어도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으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이더라도 특수교육법 제16조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받은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3)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맞는 개별화교육을 실시하고,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 설치한 학급

4)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함께 차별받지 않으며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교육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자 배움의 기회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 징계는 일반 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합니다.

◆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

Q. 장애가 있거나, 특수학급(라온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친구의 부족한 부분보다 장점 봐주기

둘째, 지나친 도움보다는 친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돋기

셋째, 수업 시간 변경, 과제, 준비물 알려주기

넷째, 단체활동, 체육활동, 모둠학습에서 함께 하기

* 교육활동보호안내서 참고(한국교육개발원 보급)

◆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

모든 아이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가꾸어 나가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습권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교원·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로 거듭나야 합니다.

학교는 선생님의 사랑과 보살핌, 학부모의 존중과 지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하여 2023년, 교권 보호 5법 통과

【 교권 보호 5법 】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유아교육 ▲ 교원지위법 ▲ 아동학대처벌법

◆ 교권침해 직통번호

♥ 1395 (교권침해 일①이 생③기면 구⑨해 주오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신고·상담이 가능합니다.

- ▶ 개통일: 2024.3.4.(월) * 3.4.(월)~3.17.(일) 2주간 시범운영
-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SNS 소통(카카오톡 채널  추가) 상시 가능
- ▶ 주요 상담 내용
 -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접수 및 피해교원 관할 교육지원청·소속학교 연계
 - 교육활동 보호 법령 및 매뉴얼 등 공통 제도 안내
 -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 마음건강·법률상담 등 지원 안내 및 담당자 연계
 - 악성민원 등 대응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연계
 -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안내 및 담당자 연계
 - 시도별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
 - 기타 교권 보호와 관련된 시도별 지원 제반 사항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 「교원지위법」 제19조 및 관련 법령

- ◆ **공무방해(업무방해)**: 국·공립학교(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 **명예훼손**: 공연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 **모욕**: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 ◆ **협박**: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 **폭행**: 사람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행위
- ◆ **상해**: 폭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 ◆ **손괴**: 타인의 물건, 문서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 **성폭력 범죄 행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 ◆ **불법정보 유통 행위**: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동성간에도 인정될 수 있음
-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반복하는 행위
-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등 무단 배포 행위**: 교육활동(원격수업 포함)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수업 중 이석하거나, 수업도구를 던지는 등 수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 **무고**: 교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위하여 신고하는 행위
-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을 괴롭히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특이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행위
-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법령에 따른 학생 교육, 생활지도 등의 임무가 아닌 일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가.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무엇인가요?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부모로 구성되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학부모 자치조직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위해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구

나.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라면 참여 가능	①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②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③ 지역위원: 학부모위원/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

다.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급식 등) -학부모 지원봉사 등 학교교육활동 참여 · 지원 (교통안전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도서명예사서, 학부모동아리, 학교행사지원, 재능기부)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독서토론 등)	-학교 예산안과 결산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영 및 사용 -학교급식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교복 및 졸업앨범 등 학부모경비 부담 사항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기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라. 학부모회 구성

학부모회 총회 [조례 제10,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총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매년 3월 개최 • 학부모회 총회는 전체 학부모 회원이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결 기구 •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규정 제·개정, 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등을 의결함 ● 임시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회원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회의내용 : 전체 학부모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대의원회 [조례 제9,12,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매년 1회 이상 개최 • 구성 :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학급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의결 기구 (대의원의 수는 단위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함) •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총회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가. 공교육 정상화법 및 선행학습 금지 안내	18
나. 2024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19
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21
라.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23
마.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24
바. 가정 내 양성평등교육	25
사. 흡연 예방 교육	26
아. 감염병 예방 교육	27
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교육	27
차.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안내	29
카. 비만·저체중 예방 관리 교육	29
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31
파. 아동학대 예방교육	32
하. 학생 생활 관련 예방교육	33
- 학교폭력 예방교육	
- 인권교육	
- 밥상머리교육	
- 인성교육	
- 도박예방교육	
- 정보통신 윤리교육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3월 11일 제정, 2014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선행교육이란?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함)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선행학습 유발행위(평가)란?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방침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 점검

- 점검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일치 여부, 교과별(학년별)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

- 점검시기: 학기별 1회 이상

- 점검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

※ 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시 유의사항: 계획(편성)된 교육과정 운영(교과별 지도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 학년별 평가계획(성장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교과서 중심의 평가가 아닌 교육과정중심(성취 기준)의 수업과 평가로의 전환을 통하여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방과후학교는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보충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되며,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고 정규수업을 대신한 교과서 진도 나가기, 상급학교의 교과 프로그램 개설 등 교육과정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금한다.

4) 학부모의 책무

-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청탁금지법의 목적

가)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

2) 청탁금지법의 법률 적용 대상

가)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등

나) 공직자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안 됨

다) 공무수행사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3)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가) 청탁금지법 제정 목적 : ▷부정 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나) 항목별 정의

부정청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에게 부정청탁 대상 직무(14가지)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금품 등	금전·숙박권 등 모두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2024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가)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 YES: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나)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 NO: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 YES: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라)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 NO: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마) 담임선생님의 경조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축·조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 NO: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NO: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NO: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 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아) 학부모가 자녀의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YES: 현재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자)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 YES: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에 학교에서 학부모 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 YES: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은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1) 자녀의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아이의 말을 공감하면서 들어줍니다.**

- 가) 적절한 고개 끄덕임 (말을 듣고 있다는 확실한 표시)
- 나) 단순한 음성반응 (응, 응? 아하! 그래? 등등)
- 다) 관심어린 질문 (그래서 아팠니? 힘들진 않았니? 등등)
- 라) 말의 반복, 요약, 환언 (자녀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 하기. ~ 했구나. 등등)

자녀의 정신건강은 어떤가요?

(부모님이 살펴봐야 할 자녀의 정신건강)

자살징후는 언어적, 행동적, 상징적 표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단서에 대해 미리 알고 이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 위험신호

<자료출처 : 보건교과서>

2) 자살 경고에 대한 대처 방법

- 가) 평소와 다른 행동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라는 걸 깨닫고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알리려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심한 반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줄 진의 여부에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나) 반드시 당사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도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다) 자살을 시도하는 10대는 부모나 가족, 친구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행동에 대응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의 기저에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라) 심리상담자, 신경정신과 의사, 청소년 문제 전문가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살을 시도한 원인 규명을 하고 당사자를 보호하고 도와줄 만큼 관심이 있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 입원, 상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3) 자살의 징후

언어적 단서	정서·행동적 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말하거나 문자메시지, 일기장, 낙서의 암시 내가 사려져 줄게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이젠 정말 끝이야 아무것도 내 상황을 바꿀 수 없어 엄마, 아빠 “미안해” “안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작스런 행동변화, 활동수준의 증가/감소 물건을 정돈해서 주변사람에게 나누어 줌 소중한 물건이나 상장 등을 버리기 먹지 못하거나 혹은 과식 수면형태 변화 단정치 못한 외모 감정과 관련된 신체적 불편함 호소 죽음에 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농담으로 라도자살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4) 대응방법

가) 경청 - 주의 깊게 듣는다.	아이가 하는 말을 기꺼이 들어주고 아이를 도와 진실된 상황을 이해시키되, 잘못된 확신은 피하게 한다. 도덕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나) 격려 - 당신의 아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다.	관심을 표현할 때는 말투가 적절해야 하며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아이가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을 느껴보려는 자세로 「나는 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는지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와 함께 너의 문제를 마주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임한다.
다) 심각한 자살의 생각과 느낌이 있을 때 민감성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자살에 대한 생각을 물어야 한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담담하게 자살의 의도를 표현하더라도 신중히 처리한다.
라) 행동을 취한다.	자살위기에 처해있다고 느낄 때는 다른 가족에게도 알리고 학교 선생님께도 연락한다. 혼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마) 자살하기 전에 보이는 의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살에 대해 사전에 준비를 한 아이는 정말로 한번은 시도를 할 수 있다. 만약 아이가 정말로 사전에 준비를 했었다면 반드시 가족, 선생님, 혹은 전문기관의 전문가에게 알리고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한다.
바) 충분한 관심을 주어 아이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시킨다.	현실에서 아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친구, 선생님, 동반자, 종교인 등 모두가 아이에게 관심을 주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다시 자신을 확신할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며,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 이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동성폭력은 아동의 집, 학교 등 아동과 근접해 있는 곳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가정,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해 자녀에게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해 자녀에게
1) 이성에게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지 말아라. 2) 상대방의 거부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3) 성폭력은 범죄행위임을 명심해라. 4) 이성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라. 5)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6) 음란 영상나 음란 사이트를 보지 말아라. 7) 불쾌하거나 나쁜 접촉은 장난이라도 하지 말아라. (꽃으로도 사람을 때려서는 안된다.)	1) 평소 너의 주장을 뚜렷이 하여라. 2) 말이나 행동에서 애매한 여운을 보여주지 말아라. 3) 너의 성가치관, 행동에 기준을 가져라. 4) 친구와 너의 생각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를 수 있음을 알아라. 5) 너를 소중히 여겨라. 6) 부모가 항상 너의 편이며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성범죄자는 이런 아이를 두려워합니다.”

- 1 사랑받는 가정, 안전한 가정환경
- 2 ‘질문이 많은’ 부모
- 3 신체적인 애정 표현을 많이 받은 아이
- 4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아이

1) 성 비위 예방을 위한 학부모 지침 및 준수사항

- 가)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자녀의 안전을 지킵니다. 항상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나) 성(性)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즉시 그리고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 다) 자녀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미리 둘러봅니다.
- 라)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면 참지 말고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 마)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방법을 가르쳐줍니다.
- 바)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만 해도 처벌됩니다.
- 사)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구매 관련 카페나 글을 발견하면 즉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합니다.
- 아) 부모님께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줍니다.

2) 성 비위 피해 상담 및 지원센터

- 가) 신고전화 : 관할경찰서 국번 없이 112
- 나)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긴급전화 1388 : 성 비위 피해 관련 긴급 위기상담 및 신고전화
- 다) 한국 성폭력 상담센터 : <http://www.sisters.or.kr> (02-338-5801~2)

라) 사이버수사대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접속 후 사이버범죄신고
마)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활용 : 가정 및 학교 근처 성범죄자 인적사항 확인

3)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활용 안내



- 가) 조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성명, 사진, 나이, 신체정보, 실제거주지, 전자장치 등
나) 알림기능으로 설정: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음성과 메시지로 제공 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 디지털 성범죄란?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등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환경에서, 혹은 그것을 매개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로 **불법촬영이나 소비(불법촬영물을 보는 것)** 또는 **복사를 말합니다.**

디지털그루밍 대처방안

- 나이, 주소, 학교, 아이디,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제공 요청
-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
- 따로 메신저로 연결하자고 제안
-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따로 만나자고 제안
- 사진 및 동영상 제공 요청

거절하고 이런 제안이 있었음을 보호자에게 말하기



■ 디지털 세상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 ❖ 피해 알아차리기: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지금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 ❖ 상담하기 “말해도 괜찮아”: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중단하고 안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 신고하기: 도와줄 수 있는 어른(부모님, 선생님, 경찰, 등등)
- ❖ 디지털범죄 상담 또는 신고할 수 있는 곳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https://www.women1366.kr/stopds>)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긴급전화 1366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실천해야 할 중요한 교육입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양성 중 어느 특정한 성(性)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남녀 모두에게 잠재된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2)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생각들

- 가) 집안 살림은 가족이 함께 분담한다.
- 나) 행복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노력해서 이룰 수 있다.
- 다) 여자나 남자 모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
- 라) 남녀가 똑같이 일을 하는 경우 임금, 승진의 기회도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3) 자녀양육·교육에 있어서의 평등

- 가)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합니다.
- 나)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 라)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배제되도록 지도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마) 학업성취나 수행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보다 개인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바) 어렸을 때부터 딸과 아들에게 예술이나 체육을 함께 즐기며 심신이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웁니다.
- 사)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아) 딸들에 대해서는 예의바른 행동과 여성스러운 행동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수줍어하고 침묵을 지키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일깨워 줍니다.

1) 간접흡연과 3차흡연이란?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흡연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 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 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흡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흡연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 역시 흡연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차 흡연 흡연자 본인의 피해

- 백내장, 치매, 뇌졸중, 류마티스 관절염, 췌장염
- 폐암, 유방암, 신장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 우울증, 만성스트레스, 정자 손상 등 초래

2차 흡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 우울증, 당뇨병, 고혈압, 동맥 손상
- 성대 손상, 유방암 등

3차 흡연 옷, 벽면에 붙은 연기로 인한 피해

- 실내 유해물질과 결합 - 발암 물질 생성
- 어린이, 유아, 태아에게 피해 집중
- 니코틴 중독, 태아 폐 발달 저해, 천식 등

2) 흡연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흡연율이 높다고 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면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부모가 흡연하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국가에서는 국민의 금연을 돋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금연길라잡이 <http://www.nosmokeguide.or.kr>
-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자녀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봅니다.
-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가족과 함께 외식할 때는 금연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아

감염병 예방 교육

1) 감염병 발생 시 등교 중지 및 출석 인정

가)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 학생에게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이 됩니다.

※ 등교중지 대상자 : 법정감염병 환자, 법정 감염병 의심자, 법정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나) 등교중지 방법

- (1)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연락한 후 병원에 갑니다.
- (2)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이 나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하시고 격리치료를 합니다.
- (3) 치료, 완치 후 병원에서 확인받은 의사의 진료 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등교중지기간 명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다) 유의사항

- (1) 의심 학생은 확진 여부 판정 시까지 등교 중지 및 출석인정으로 처리됩니다.
- (2) 완치되어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중지입니다.
(등교중지 기간보다 미리 등교 시에는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 (3) 등교 시 학생은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부)를 학교로 제출
- (4) 소견서 상 치료 기간은 학교에 나오면 안 되며, 학원도 가지 않도록 합니다.

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교육

1)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 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 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신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을 할 수 있음.

※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 ₁₀ 150이상 또는 PM _{2.5} 75이상 2시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 미리 외부 활동이 계획되면 학교에서 보건용 마스크 배부하여 착용 후 진행 • 실내 공기질 관리(창문 닫기, 공기청정기 가동, 손 씻기) •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행동요령) 실시
경보 PM ₁₀ 300이상 또는 PM _{2.5} 150이상 2시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 실내공기 질 관리(창문 닫기, 공기청정기 가동, 손 씻기) •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행동요령) 강화 •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월)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 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 학생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미세먼지 예보제와 경보제

예보제 (대기 모델링을 이용하여 예측 발표)					경보제 (현재의 실시간 농도 측정값 기준으로 발령)
예보내용		농도별 예보등급($\mu\text{g}/\text{m}^3$)			
예보내용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주의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PM10	0~30	31~80	81~150	151이상
예보내용	PM2.5	0~15	16~35	36~75	75이상
확인방법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에어코리아)					경보문자 신청방법: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 고객지원 → 문자서비스 → 서비스 신청

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수칙

- 가)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 나) 등·하교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이용하기(KF80, KF94)
 - 올바른 마스크 사용방법을 숙지하기
 - **마스크 착용 후 두통, 호흡곤란, 어지럼증** 있으면 바로 벗을 것.
 -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 천식 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기

<보건용 마스크(KF80, KF94)의 올바른 사용 방법>



- 다) 외출 후 손, 얼굴 깨끗이 씻기
- 라) 수분, 과일, 채소 등 충분히 섭취하기
- 마) 창문을 닫아서 실외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 바)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사)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차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안내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1)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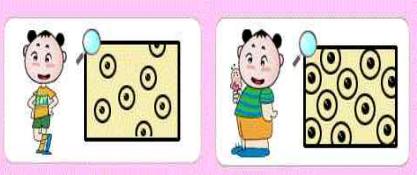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 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아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카

비만·꺼져증 예방 관리 교육

◆ 비만이란?

일반적으로 비만이라고 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체중과다)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비만증이란 우리 신체 내에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거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소아 비만은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일단 증가한 지방세포 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정상 어린이보다 75-80% 이상 높으며, 여러 가지 성인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치료 및 예방해야 합니다.



<정상세포>

<비만세포>

◆ 비만 관리 방법

-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먹고,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 조금만 먹기 (야식 먹지 않기)
- 음식을 천천히 먹고, 20회 이상 씹어 먹고, 식후 바로 양치질하기
- 채소를 많이 먹고,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을 적게 먹기
- 매일 30~60분 동안 땀이 나도록 운동하고, 자신의 정상 체중을 알고 유지하기
- 책, TV 등을 보면서 음식을 먹지 않기

◆ 저체중의 원인

- 활동량에 비해 음식물을 먹는 양이 부족하거나 질이 낮을 때
- 먹은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 흡수되지 못할 때, 편식이 심할 때
- 결핵이나 갑상선기능항진증 등과 같은 소모성질환이 있을 때
- 심리적 스트레스, 불안, 걱정 등으로 인한 식욕부진이 있을 때

◆ 저체중의 문제점

- 식욕부진, 소화장애 등에 의한 빈혈,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
- 신체 면역력이 저하되어 결핵, 간염, 감기 등의 감염성질환에 걸리기 쉽다.
- 여성의 경우 불임, 저능아 출산, 생리불순, 유산의 확률이 높아지기 쉽다.
-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탄력성이 감소된다.

◆ 저체중 예방법

- 반드시 1일 3회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적당량의 간식을 먹기
-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는 열량이 농축된 식품을 이용하기
- 특별히 좋아하는 식품이 있을 경우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많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됨
- 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 등과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끼 먹어야 함
(단백질이 부족하면 위장 점막을 비롯하여 신체 내의 중요한 성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함)
- 식용유, 버터, 탄수화물(당분)을 섭취하기
- 저체중인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많으므로 1일 2회 이상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기
- 지나친 흡연과 과음,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마시면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주의하기

▶ 100Kcal를 소모할 수 있는 운동량 및 활동량

운동량 또는 활동량	소요시간 또는 횟수	운동량 또는 활동량	소요시간 또는 횟수	운동량 또는 활동량	소요시간 또는 횟수
천천히 걷기	28분	달리기	1.2km	팔굽혀 펴기	12회
빨리 걷기	10분	정지된 자전거 타기	6분	수영	10분
계단 오르기	120계단	턱걸이	6회	탁구	10분
등 산	24분	윗몸 일으키기	18회	핸드볼	18분
배 구	32분	골프	19분	세탁	35분

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신종불법 마약류

최근 본인이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흡입하고 또래들에게 웃돈을 받고 팔기도 한 10대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청소년 관련 마약류 관리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신종불법 마약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항정신성물질 (psychoactive substance)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된 불법약물을 지칭하고, 법률적으로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통칭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따른 폐해

-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위험한 사용, 내성 및 금단증상
- 신경조직망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 불가
- 기억력 감퇴, 집중력·판단력 장애 발생
- 뇌·간·심장 등 신체 각 기관 손상 가능
- 환각상태에서 범죄 유발

약물(필로폰)을 사용하여 변한 얼굴

미국 버지니아주 타즈웰군에 거주 40대 여성으로 2명의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으나 1998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믿고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불과 4년 만에 갈색머리는 하얗게 세어 버렸고 얼굴은 70대 노인처럼 푸글쭈글해졌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후원방법 : 자동이체(CMS, 지로), 온라인송금
예금주 :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계좌번호 : 기업은행 327-001666-04-0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8길 10 www.drugfree.or.kr
Tel. 02-2677-2245 Fax. 02-2677-2247 중독재활센터 02-2679-0437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흡입제는 뇌의 화학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뇌와 중추신경계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 대마초는 해마에 손상을 주어 기억손상이 올 수 있다. 또한 대뇌부종, 뇌출혈, 편집증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필로폰은 뇌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발작이 올 수 있다.



흡입제 사용자는 코와 입주위가 자주 헐고 후각기능에 문제가 생기며, 청각과 관련하여 뇌에 정보를 보내는 세포를 파괴시켜 듣기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흡연은 이를 누르게 하고, 잇몸병을 일으킬 수 있다. 필로폰을 장기간 사용하면 이가 부식되고 빠진다.



흡입제는 정상적인 심장박동에 영향을 주어 심장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사망케 할 수도 있다. 필로폰은 다양한 심혈관문제를 야기하는데,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박동, 혈압이 높아지고, 과도한 투여를 한다면 심장발작이 올 수 있다. 스테로이드는 심장이나 뇌로 흘러들어가는 혈액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 뇌출증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



타르는 담배와 마리화나 사용자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남용자는 흡입할 때 유독가스가 폐의 산소를 대체하여 호흡이 곤란해져 사망할 수 있으며,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스테로이드 사용은 간의 종양이나 피가 찬 낭종을 일으킬 수 있다. 종양이나 낭종은 내부혈류를 일으켜서 간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



흡입제는 신장조직에 영향을 주어 면역계통질환에 원인을 제공한다. 엑스터시 사용자는 체온이 올라가고 진정되지 않으며 신부전증에 걸릴 수 있다.



흡입제를 사용하면 얼굴빛이 노랗고 피부에 윤기가 없어진다. 스테로이드 사용은 얼굴 전체에 피부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주사기 사용자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피부농양이 온다.



흡입제는 뼈속의 골수를 손상시키고 성장호르몬의 역할을 방해하여 키가 정상적으로 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피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적혈구, 백혈구의 새로운 세포 생성에 결핍현상이 생겨, 재생불량증·빈혈이나 백혈병 등이 생길 수 있다. 필로폰 사용은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 상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면접 상담, 편지/PC 상담 등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상담소의 전국 상담 대표전화는 1899-0893입니다.

* 상담, 재활문의 바로가기 <http://www.drugfree.or.kr/counsel/index.html?contentsNum=4>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입니다. 착하고 순수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폭력과 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함은 물론, 스스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아래 내용을 가정에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십시오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즉, 고등학생도 포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아동학대 특례법 제 10조2항)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은 신고 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 의무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 신고의무자 직군은?(총 24개 직군)

- 가정위탁 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건강 가정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시설장 및 종사자 /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장 및 종사자 / 성매매피해상담소의장 및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 / 구급대원 / 응급 구조사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 교직원 및 강사 / 의료기사 /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 장애인복지시설의장 및 종사자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용약시설 및 종사자 / 아이돌보미 / 청소년단체 및 산학겸임교사 /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 학원장 및 강사 / 취약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드림스타트)

★ 아동학대 신고요령

☞ 1STEP : 아동학대 발견 및 의심이 가는 경우

-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인지하기
-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 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
- 피해아동 발견 시 위험 상황으로부터 빠르게 조치하기

☞ 2STEP : 아동학대 신고 112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안전신고센터(119), 범죄신고(112)
- 학대 의심 내용, 아동 및 학대 행위자, 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 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 3STEP : 협력 및 지원

-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
-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협조 : 보호 중인 피해 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를 요구 시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알리기

하 악생 생활 관련 예방교육

1) 학교폭력예방교육

가)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 학교폭력이란?

-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다.

○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적 폭력 : 때리기, 밀기, 찌르기, 차기 등
- 언어적 폭력 : 놀리기, 비하하기, 욕하기, 모욕하기, 위협하기, 소문 퍼트리기 등
- 금품갈취 : 돈이나 물건 요구 등
- 강요 : 강제적 심부름, 강요 등
- 성폭력 : 언어적, 비언어적 성폭력
- 따돌림
- 사이버 폭력 :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나) 가정에서 학교폭력의 징후 파악하기

○ 피해의 징후

- 특정 학생에 대한 혐담을 많이 한다.
-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친구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기보다 혼자만 있으려고 한다.
-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 청소 당번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학교에서 늦게 올 때가 자주 있다.
-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학교에 가기를 꺼린다.
-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으로 수심이 있고 공부에 열중하지 못한다.
- 용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달라고 한다.
- 옷이나 가방, 학용품 등을 구입하는 취향이 평소와 달라졌다.
- 학교에서 옷이나 신발 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가 잦다.
- 몸에 다친 상처나 멍 자국이 발견되고 물어보면 그냥 넘어졌다거나 운동하다 다쳤다고 한다.
- 교과서나 일기장, 메모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에 ‘죽어라’ 또는 ‘죽고 싶다’ 와 같은 폭언이나 자포자기 식의 표현이 있다.

○ 가해의 징후

-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반항하는 행동을 자주 한다.
- 육체적 활동을 좋아하며 힘이 세다.
- 화를 잘 내고 이유와 핑계가 많다.
-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낸다.
-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다.
- 부모님이 사 주지 않은 옷이 생겼으며, 친구의 옷을 빌렸다고 한다.
-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붕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다.
- 친구에게 전화해서 무엇을 요구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잦다.

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 자녀와 정규적으로 시간을 정해 대화한다.
-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감정표현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이야기한다.)
- 자녀가 주로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어디에 가서 노는지 알아둔다.
-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
- 전화나 메일을 통해 자녀를 수시로 격려한다.
- 항상 자녀를 존중해 준다.
- 효과적인 갈등 해결 방법과 대인관계 기술을 가르쳐준다.
-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사(전문상담교사, 담임교사, 학교폭력책임교사, 학생부교사 등)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한다.
-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약자의 처지에서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한다.
- 누군가로부터 원치 않은 유혹을 받거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선생님이나 부모 또는 전담 경찰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한다.
-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이나 불필요한 시내 배회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자녀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도록 지도한다.

라) 학교폭력사안처리 절차



2) 인권교육

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내 자녀 바라보기

-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한다.
- 가정 안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자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회의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는 단지 조언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 형제·자매간에 성별, 나이, 학업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 자녀를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일방적인 체벌보다는 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교육적 체벌도 가급적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지 부모 자신이 먼저 성찰해야 한다. 자녀를 때리지 않고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욕설해서는 안 된다.
- 자녀를 흥분한 상태에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생각과 생활 태도를 지니도록 늘 가르쳐야 한다.
-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되, 자녀의 사생활도 보호해주어야 한다.

나) 가정 내 인권교육 방법

○ 인권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가족구성원 실천 예시

- (1)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인권에 대해 생각을 해 보고 아래의 내용을 예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기
 - 왕정 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인권의 역사
 - 세계인권선언이나 아동 권리협약 등 문건의 생성 이유의 그 의의
 - 공정무역의 뜻과 의미
 -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동 노동 착취와 같은 현실적인 사례
 - 최근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관한 생각
 -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인권 보호와 침해의 사례
 - 그 밖에 매체 등을 접하게 되는 다양한 인권 관련 사례
- (2) 「서로 제대로 사랑하기 열 가지 약속」, 『인권약속』 등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족들의 약속을 정하여 꾸준히 실천해 보기
- (3) 학교, 지역사회에서 전개하는 다양한 인권 관련 행사 참가해 보기

○ 인권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부모님의 실천 예시

- (1) 자녀의 사생활 존중하기
 - 자녀 일기장 몰래 보지 않기
 - 자녀 휴대전화 몰래 보지 않기
 - 자녀 책상, 가방 뒤지지 않기
 - 자녀 우편물, 전자우편 몰래 보지 않기
- (2) 안돼!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 긍정적이고 권유형의 표현으로 대화하기: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떨겠니?”
- (3) 자녀의 인격 존중하기
 -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기: ‘야, 인마, 이 새끼’ 등 감정적 표현 사용하지 않기
 - 자녀의 말 끊지 않기
- (4) 자녀의 의견과 선택의 권리 존중하기
 -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기

3) 밥상머리 교육

가)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

- 아이들이 똑똑해진다.
 - 가족 식사 시간의 대화가 언어습득과 언어 구사에 매우 효과적이다.
 - 가족 식사 횟수는 학업 성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낀다.
 - 가족 식사가 아이들의 음주, 흡연 등 부적응행동을 줄여줍니다.
 - 부모와 식사를 자주 하면 우울증이 줄고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 아이들이 예의바른 행동을 한다.
 - 가족식사는 작은 예절 수업 시간입니다.
 - 밥상머리 식탁은 예절, 공손, 나눔, 절제, 배려를 학습하는 곳입니다.
- 가족식사로 균형적인 식습관이 형성되고, 비만, 식사장애 등이 줄어듭니다.
- 가족식사를 함께하면 가족 간 강한 유대가 생기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나) 밥상머리 교육 방법

-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가족 식사의 날”을 가진다.
-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한다.
-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한다.
- TV는 끄고, 전화는 나중에 한다.
-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먹는다.
- 일과를 서로 나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의 열린 질문을 던진다.
-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공감과 칭찬을 많이 한다.
-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다.
-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 식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출처 : 밥상머리교육 학부모용 길라잡이(2012년) - 교육과학기술부]

4) 인성교육

가) 인성교육이란?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 및 품성을 배양시키어 마음의 바탕과 사람의 됨됨이를 교육함으로 학생들의 지·덕·체를 조화롭게 발달시켜 미음을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말한다.

나) 자녀의 인성교육을 위한 노력

○ 바람직한 부모상

- 부모 스스로가 훌륭한 교육자가 되도록 한다.
- 가족 간에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 여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낸다.
- 정서적인 안정감을 심어준다.
- 자녀를 칭찬해주어야 한다.
- 자녀의 사소한 것도 기억하는 부모가 된다.
- 부모는 자녀 성장의 조력자임을 잊지 않는다.
- 약속을 지키는 부모가 된다.

○ 자녀를 비뚤어지게 하는 부모상

- 자녀의 모든 것을 받아 주며,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식의 물질적 보상에서 만족을 얻는 부모
- 자녀가 가정에서 잘못한 행동 등 모든 기본생활 예절교육을 학교로 미루려는 부모
- 공부 잘하는 아이와 비교하여 부지불식간에 열등감을 조장하는 부모
- 자녀들은 무조건 가부장적 권위만을 앞세워 강압적으로 지도하려는 부모
- 대학생 자녀는 이미 다 컸다는 생각으로 방임하는 부모

○ 소신있는 부모

-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자녀 교육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진 부모
-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며, 자녀를 당당하게 대하는 부모
- 일시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자녀를 믿으며, 자녀와 함께 정기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부모

○ 소신있는 부모의 태도

-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남과 더불어 사는 것을 먼저 가르친다.
- 자녀가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관심을 둔다.
- 말로만 가르치기보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다.
- ‘남들이 어떻게 하나’ 보다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을 생각한다.
-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엄격하게 바로 잡는다.
- 자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지 않는다.
- 자녀 교육을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 자녀의 꿈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한다.
- 자녀에게만 투자하지 않고 부모 자신에게도 투자한다.

○ 인성교육을 할 때

-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 착하기만 하면 뭐하나! 능력이 있어야지!
 - 너 하고 싶은 대로 다해. 기죽지 말고!
- 이런 말을 자녀에게서 자주 듣지 않습니까?
 - 왜 엄마는 이랬다 저랬다 해!
 - 아빠도 안 하면서 왜 나보고만 하라고 해!
- 소신있는 부모라면.
 - 좋은 품성은 평생의 자신이다.
 - 21세기에도 변하지 않는 품성이 있으며,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기본 품성이 있습니다.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5) 도박예방교육

가) 아이와 ‘도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와 도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게임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아이의 건강한 선택을 돋고, 중독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며, 스스로 개인적인 한계를 설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아이가 자신의 위험 행동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것은 아이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나) 스마트폰을 통해 받은 스팸메일과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 미리 경고합니다.

대부분의 불법 인터넷 도박 운영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수시로 스팸메일을 보내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들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휴대 전화번호와 계좌 번호만 불러주면 회원가입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1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인인증 과정이 없으므로 청소년들이 쉽게 불법도박 사이트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 사이트의 유해성과 불법에 대해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아이들에게 미리 이러한 위험성을 알리고 경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아이의 놀이 방법 및 게임을 하며 보내는 시간을 파악합니다.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으로 놀고 있는 아이들은 보면 단순히 오락게임을 하려니 생각하기 쉽지만, 아이들이 도박성 게임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은 대개 처음에는 무료로 게임을 제공하면서 점차 도박에 빠져들게 하다가 결국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료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켜보되, 아이의 주된 놀이 방법(인터넷 도박게임, 카드, 오락기 등)은 무엇인지, 도박성 게임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아이의 도박 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도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충동적인 성향이 있고, 자극적인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도박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부모나 형제자매, 친구가 도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도박에 대해 허용적인 가족 분위기일 때, 주변 환경이 도박 활동에 대한 접근이 쉽고 주위 사람들이 자주 권유할 때, 아이가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마) 아이에게 좋은 역할모델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도박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심각한 도박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행동을 모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혹은 교사가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거나 로또 혹은 스포츠토토 등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도박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박을 아예 접하지 않거나 접하더라도 시간과 돈의 한계를 명확히 지키고 건전하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부모가 된다.

바)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만약 부모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빨리 도박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찾아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도박중독은 재발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최소 1~2년은 아이들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가족과 주변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1. 책임규약 목적

-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악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제15조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p><학생으로서의 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등 학교폭력을 하지 않는다.✓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을 본다면 방관하지 않는다.✓ 다른 학생들을 존중하며,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p><보호자/학부모로서의 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의 교육이념을 지지하고 학교 구성원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학교와 소통하겠습니다.
성명 (서명)	성명 (서명)
2024. 3. 27. 신태인초등학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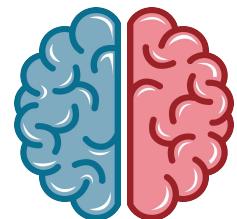
6) 정보통신윤리교육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보급의 확대 등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고 양질의 교육자료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유해 정보, 스마트폰 중독 등의 양면성을 지니면서 학생들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가) 우뇌증후군

- 스마트폰 동영상은 좌뇌만을 강하게 자극하여 우뇌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 우뇌가 발달되어야 하는 직관적 사고기에 좌뇌만 발달하여 좌우 뇌 균형이 깨짐
- 충동성 과잉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



나) 팝콘브레인(popcorn brain)

-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 게임 등을 지나치게 오래 할 경우 발생
-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스마트폰에 몰두하여 뇌가 팝콘처럼 튀어 오르는 정보에만 반응하고 상대적으로 느린 현실에는 무감각해지는 현상



다) 학습능력 저해

- 빠르게 움직이는 동영상에 익숙해져 정적인 활동인 독서가 어려워짐
- 자극 -> 정리 -> 표현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스마트폰의 경우 보통 '자극'만 이루어짐

라) 언어 발달, 정서 인지 발달에 악영향

- 스마트폰 동영상은 단방향으로 이루어져 '듣기', '말하기'의 양방향 소통 시간이 줄어들어 언어 발달의 기회 감소
- 가톨릭대 심리학과 발달심리연구실 실험결과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유아일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짐

<스마트폰 사용 습관 확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 또는 청소년 대상 척도(관찰자용/성인용)' 활용 (<http://www.iapc.or.kr>)

<인터넷, 게임 이용 관리>

■ pc 사용 관리 : 그린 I-net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유해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방송통신 정보를 이용하도록 구축한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입니다.



<http://www.greeninet.or.kr>에서 설치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포털사이트 '그린아이넷' 검색을 통해 다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관리>

■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어플리케이션 활용

청소년이 스마트폰에서 불법 유해정보(앱,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정보 및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용 SW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스마트폰에 설치한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 · 앱 · 웹사이트 관리, 자녀 스마트폰 이용 통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모 및 자녀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자녀 스마트폰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가능합니다.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

학부모 온라인 교육

지금 신청하세요

2024. 3. 4.(월) ~ 12. 31.(화)

교육기간 2024. 3. 4.(월) ~ 12. 31.(화)

교육대상 유·초·중·고 특수학교 학부모

교육 분야	이수증
발달특성 이해	인성·생활지도
학습지도	진로·진학지도
부모역량강화	부모자녀관계
교육제도·정책	학부모참여
마음 건강	학교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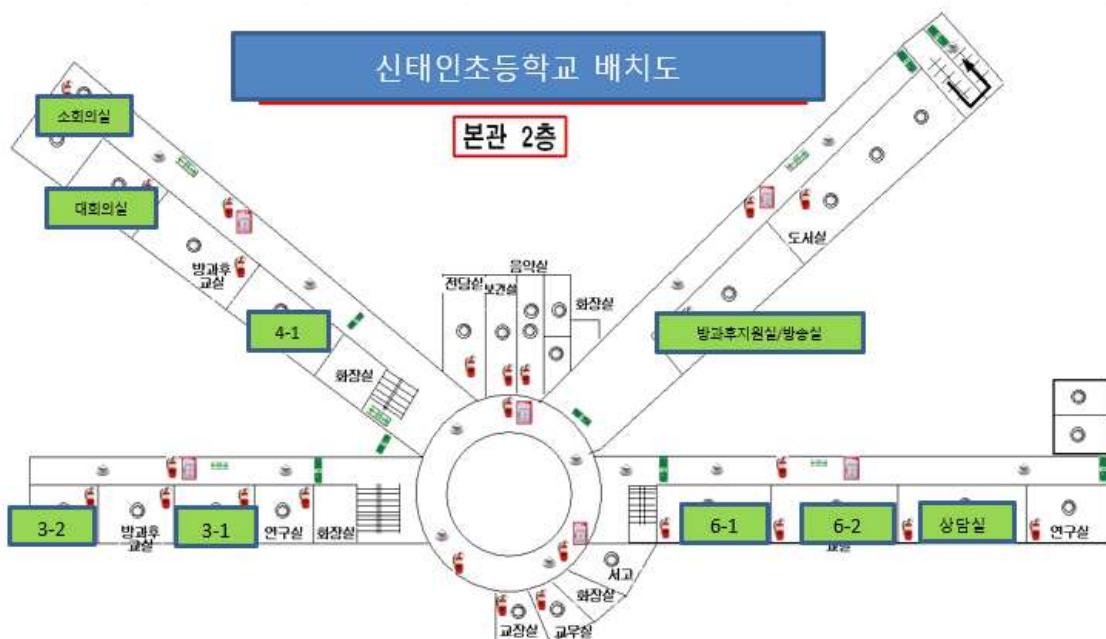
※ 이수증 신청 방법

- 회원가입(학부모ON누리)
- 로그인/학습/완료
- 이수증 발급 신청

✓ **교육문의:** 063.239.3277~8, 3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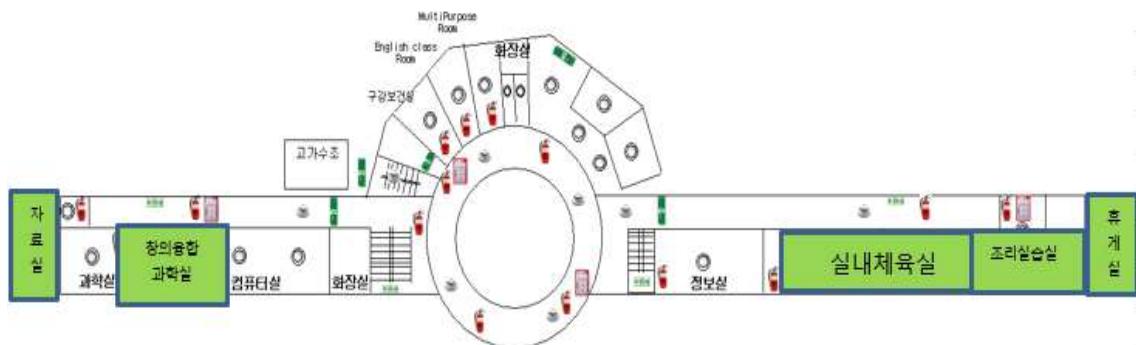
✓ **신청방법:** 전북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 교육신청 / 온라인 교육





신태인초등학교 배치도

본관 3층



* memo